2026년 9월 11일 [2026-19]

중국 해외투자규정 세부절차인 「해외투자관리방법(对外投资管理办法)」 마련 동향

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| **오정미** 선임연구원 (jeongmi@kosti.or.kr)

▸ 개요

- '26.8.21. 중국 발전개혁위원회(NDRC)는 「해외투자규정('26.7.)」 세부 이행절차를 규정한 「해외투자관리방법」 초안 공개[1] (~'26.9.20. 의견수렴)

  * '17년 「기업 해외투자관리방법」을 전면 개정하여 투자주체를 기업 중심에서 조직·개인까지 확대

  - 해외투자를 ▲민감투자·▲非민감투자·▲역투자(해외기업을 통한 중국 內 투자)로 구분하여 〈승인·신고·보고〉 방식의 차등 관리체계를 실시하고,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보심사 실시

〈 중국 해외투자관리방법에 따른 관리방식 〉

관리방식	투자방식	
승인대상 (사전)	▶민감형 투자 (직접/간접)	직접투자 / 지배 해외기업을 통한 투자
신고대상 (사전)	▶非민감형 투자 (직접)	직접투자
보고대상 (20일전)	▶非민감형 투자 (간접)	지배 해외기업을 통한 투자
	▶역투자	지배 해외기업을 통한 중국 內 투자

▸ 주요내용

1 적용범위 명확화: 투자주체·유형·활동과 지배 개념 (제2조)

↳ 투자자, 해외투자, 지배, 투자금액 판단시 '**형식보다 실질 우선 원칙**' 적용 (제71조)

- **(투자주체)** 중국 內 투자자의 범위를 기업(비금융기업, 금융기업), 기타 조직(사업단위, 사회단체 등)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명확화

- **(투자유형)** 자산·권익을 투입하거나 융자·보증 등을 통해 해외기업·자산의 소유권·지배권·경영권 등을 직접 또는 간접취득하는 행위

  -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통해 취득한 자산, 권익 등으로 해외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'해외투자'로 포함 (해외투자규정 제33조 旣규정 사항)

1) 중국 발개위, "关于《对外投资管理办法（修订征求意见稿）》公开征求意见的公告", '26.8.21.

• **(투자활동)** 토지·천연자원·인프라 분야 투자뿐만 아니라, 기업인수·설립, 금융투자(펀드 출자), 계약·신탁 등을 통한 지배활동까지 포함

〈 해외투자 활동 〉 (단,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)

유형	주요내용
토지 투자	해외 토지의 소유권·사용권 등 권익 취득
천연자원 투자	해외 천연자원의 탐사·개발에 관한 특허권 등 권익 취득
인프라 투자	해외 인프라의 소유권·경영관리권 등 권익 취득
기업·자산 투자	해외기업·기타 조직 또는 자산의 소유권·경영권 등 권익 취득
고정자산 투자	해외 고정자산의 신설·증설·개조
기업·조직 설립	해외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신설 또는 기존 기업·조직에 대한 추가투자
펀드 투자	해외 사모·지분투자펀드 신설 또는 출자
계약·신탁 등	계약·신탁 등의 방식으로 해외 기업·기타 조직 또는 자산 지배

• **(지배개념)**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결권 과반수(50%) 이상을 보유하거나, 과반수 미만의 경우 경영·재무·인사·기술 등 중요사항 지배

2 해외투자 〈승인·신고·보고〉 방식 관리 (주체: 발개위) (제11조-제40조)

❶ 승인관리: 민감형(직간접) →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

• **(대상)** 민감형(국가/업종) 분야에 직접투자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기업·조직을 통하여 수행하는 간접투자는 투자 前 승인 필요

〈 민감형 해외투자 활동 〉 (단,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)

유형	주요내용
민감국가	▸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·지역 ▸ 전쟁·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·지역 ▸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·협정에 따라 투자 제한 필요 국가·지역 ▸ 기타 민감 국가 및 지역
민감업종	▸ 무기·장비의 연구개발·생산·정비 ▸ 국경을 초월하는 수자원의 개발·이용 ▸ 언론·미디어 ▸ 중국의 법률·법규 및 관련 규제정책에 따라 해외투자 제한 필요가 있는 업종

※ 민감업종 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가 공포

• **(절차)** 신청서 접수 후, '통상심사'를 실시하여 20일 내 승인 여부 결정하되 10일 연장 가능 (관계부처는 소관업무 관련시 7일 내 의견 제출)

-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 위탁 가능하며, 전문기관 평가 기간(30일)은 승인심사 기간에서 제외 (단, 복잡한 투자는 60일 연장 가능)

• **(조건)** 해외투자가 중국의 법규 및 발전계획을 위반하지 않는지,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, 4개 기준에 따라 심사

〈 투자승인 조건 〉

- 중국의 법률·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
- 중국의 관련 발전계획, 거시경제조정정책, 산업정책 및 대외개방정책을 위반하지 않을 것
-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·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
- 중국의 국가이익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

• **(결정)** 승인조건에 부합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승인서 발급 (유효기간 2년, 연장 필요시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)

– 단, 해외투자가 中 법률·정책·국제협정을 위반하거나, 국가이익·국가안보 위협 또는 훼손시 승인기관은 단독*으로 직접 불승인 결정 가능

* 승인기관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전문기관 평가 없이 직접 불승인 가능

❷ 신고관리: 非민감형(직접) → 심사 후 수리 여부 결정

• **(대상)**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는 非민감형 투자는 신고 대상이며, 투자 前 신고서 취득 필요 (기업규모별 신고기관 상이)

– ▲(발개위 신고) 중앙관리기업 및 3억 달러 이상 지방기업, ▲(성급 발개위 신고) 3억 달러 미만 지방기업 및 개인

〈 투자자 유형별 신고기관 〉

투자자	투자금액	신고기관
중앙관리기업	금액 무관	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
지방기업	3억 달러 이상	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
	3억 달러 미만	투자자 등록지의 성급 정부 발전개혁부문
개인	금액 무관	소재지 또는 상시 거주지 성급 정부 발전개혁부문

* 기타 조직의 경우에는 기업 관련 규정을 준용

• **(절차)** 신고서 접수 후 '통상심사' 실시하여 7일내 신고 수리 여부 결정하되, 관계부처 의견청취시 7일 연장 가능

–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 위탁 가능하며, 전문기관 평가 기간(30일)은 신고 심사 기간에서 제외 (단, 복잡한 투자는 60일 연장 가능)

• **(결정)** 특별한 위반/위해 사유가 없는 경우* 신고 통지서 발급 (유효기간 2년, 연장 필요시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) * 중국의 국가이익 및 국가안보를 위협 또는 훼손한다는 사실이 없는 경우 등

❸ 보고관리: 非민감형(간접) 및 역투자

- **(대상)** ▲투자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기업·조직을 통하여 非민감형 해외투자를 실시하거나 ▲중국 내에 역투자하는 경우 보고대상 (제14조) * '역투자 개념은 상위규정인 「해외투자 규정」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개념
- **(방법)** 20일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

❹ 〈승인·신고·보고〉 全과정 감독관리 및 관련 조치

- **(변경)** 승인·신고 대상 투자의 변경시, 변경 관련 사정*이 발생하기 전에 변경신청을 하고 변경절차 신청 필요 (제36조)

  * 투자자 증가 또는 감소, 투자지역 중대한 변경 발생, 투자내용 및 규모 중대한 변경, 투자액 변동폭이 20% 이상 또는 1억 달러 이상, 승인서나 신고서 내용 중대 조정 필요

- **(감독)** 발개위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승인·신고·보고 관련 全과정 감독관리를 실시하고, 관련 정부 관계부처와 공동감독관리체계 구축
- **(조치)** 발개위는 해외투자가 관련 법규 또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,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부과 가능
  - ▲감독면담, ▲경고서 발부, ▲시정명령, ▲정기보고 명령, ▲투자방안 조정 명령, ▲해외투자 및 관련 활동의 잠정 연기 명령

3 해외투자 안보심사 (제15조)

- **(대상)**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 및 관련 자산·권익 등의 양도·처분은 안보심사 실시
  - 관련 조직 및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하고,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해서는 안되며, 안보심사 결정을 준수해야 함
- **(조치)** 국가이익·국가안보의 ▲위협 → 해외투자 중단 및 시정명령 ▲훼손 → 해외투자 중지 및 시정, 구제조치 + 책임자 경고처분 (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 추궁 가능)

4 해외투자 前後 정보보고 (제41조-제45조)

- **(투자前)** ▲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, ▲외교관계 관련 투자의 주요 사전 업무(투자계약, 투자약속 등) 10영업일 전까지 현황보고 제출
- **(투자後)** 승인·신고·보고(재투자) 대상 투자 中 보고 요건이 부과되는 투자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현황 보고 필요
- **(연차보고)**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투자 연차 보고서 제출

5 중국 해외투자자 보호조치 (제50조-제55조)

- **(즉시보고)** 중국 해외 파견 인력/자산의 중대 손실, 외교관계 훼손, 특정사안*이 국가이익·국가안보를 위협 및 훼손하는 경우 즉시보고

  * 외국 측이 기술·데이터 제공 요구 / 외국 측이 해외투자 관련 자산·권익의 양도·처분

- **(대응조치)**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해외투자가 외국 조직·개인의 차별적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경우, 관련 외국·개인에게 제재 조치

  - 외국 조직·개인 중국 국내투자 금지 또는 제한 / 중국 국내 조직·개인이 해당 외국 조직·개인과 거래·협력 등 활동 금지 또는 제한

  * 투자자 및 그 해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실행 가능한 조치

- **(상응조치)** 외국 국가(지역 또는 국제기구)가 국제법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對중국 차별적 투자·경영 제한 조치 시 상응 조치 가능

6 벌칙규정 (제56조-제67조)

-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기록 공개와 신용제재뿐만 아니라, 시정명령·위법소득 몰수, 과징금, 투자금지 및 형사책임 부과 가능

〈 주요 위반 행위별 법적 책임 〉

위반행위	행정처분	책임자 제재
프로젝트 악의적 분할 승인·신고	승인·신고 신청 불접수 또는 승인·신고 거부, 투자자에 대한 경고처분	경고처분
금지대상투자	중지명령, 지분·자산 처분 명령, 위법소득 몰수 → (처분 미이행시) 과징금 (투자액 0.5%~1%)	과태료 (5만위안~10만위안)
승인·신고 절차 미이행 (또는 허위자료 /정보 은폐 등)	① 승인·신고 신청 불수리 또는 거부 ② 시정명령, 위법소득 몰수, ③ 과징금 (투자액 0.1%~ 0.5%) → (처분 이미행시) 투자활동 중지, 지분/자산처분, 과징금(투자액 0.5%~1%)	과태료 (2만 위안~5만 위안)
뇌물/사기 등 부정수단으로 투자 승인·신고 취득	① 승인·신고 취소 ② 위법소득 몰수 ③ 과징금 (투자액 0.1%~ 0.5%) → (투자가 진행된 경우) 투자중지, 지분/자산처분, 과징금(투자액 0.5%~1%)	과태료 (2만 위안~5만 위안)

▸ 시사점

- 동 방법은 「해외투자규정」에 따라 민감/비민감 투자유형에 따라 투자관리를 구체화하는 후속 제도로 평가되며,

  - 직접투자뿐만 아니라, 해외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및 중국 內 역투자 등 해외투자 전반적인 과정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한 것

- 또한 해외투자 승인요건에 국가이익·국가안보를 명시하고, 별도 해외투자 안보심사와 연계함으로써 투자관리에서 국가안보 요소 강화

  - 다만 동 방법에서는 안보심사의 기준·절차가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, 향후 부속문서 및 세부 지침 확인 필요

〈 참고: 중국의 해외투자관리체계 관련 법규 〉

구분	해외투자규정(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)	해외투자관리방법(对外投资管理办法)
제정일	'26.6.1. (시행일: '26.7.1.)	'26.8.21. (초안 공개)
제정기관	국무원	국가발전개혁위원회
법적성격	행정법규	부문규장 (부령/규칙)
기능	기본원칙·국가안보·투자자 보호 체계 설정	승인·신고·보고 등 구체적인 세부 절차